

보도시점 2026. 10. 26.(월) 12:00 (화요일 조간) 배포 2026. 10. 23.(금)

자동차 연료첨가제,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철저히 관리한다

- 민간 전문기관 3곳 추가 지정,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검사업무 효율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영우)은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을 기존 1곳에서 4곳으로 확대하고,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역할 분담으로 유통 중인 연료첨가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대행기관 확대에 따라 각 기관이 전문 분야별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국립환경과학원은 검사업무를 총괄하며 유통 중인 연료첨가제의 사후 관리에, 기존 검사대행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해당 여부 확인 등을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불법 연료첨가제의 유통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연료첨가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연료 제조기준, 유해중금속 기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법정 검사다. 그동안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만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올해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검사항목별 검사대행기관 지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은 민간 전문기관의 수요조사를 거쳐 검사시설과 기술인력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한 3곳의 기관을 추가로 지정했다.

추가로 지정된 기관 3곳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6월 19일), 한국자동차연구원(7월 21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10월 27일)이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연료 제조기준 및 유해중금속 기준 검사를,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과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배출가스 허용기준 검사를 각각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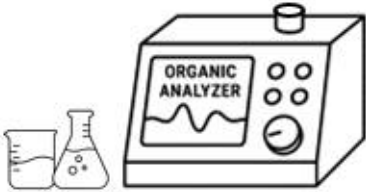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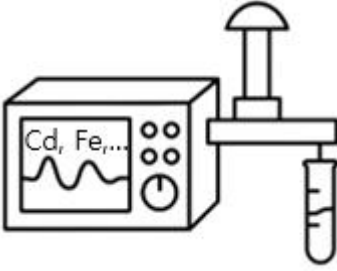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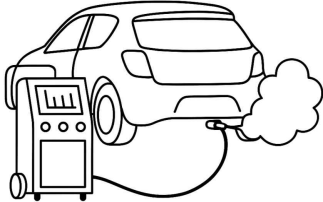
이대균 국립환경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장은 “이번 검사대행기관 확대는 민간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통 중인 연료첨가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연료첨가제 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명 및 연락처.
 2. 자동차 연료첨가제 제조기준 검사의 구성.
 3.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 절차. 끝.

담당 부서	국립환경과학원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	책임자	센터장	박준홍 (032-560-7600)
		담당자	연구관	권상일 (032-560-7648)
		담당자	연구사	서영교 (032-560-7622)

붙임 1**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명 및 연락처**

기관 종류 (검사분야)	기관명	연락처
검사기관 (연료제조기준, 유해중금속, 배출가스)	국립환경과학원	032-560-7649
검사대행기관 (연료제조기준, 유해중금속, 배출가스)	한국석유관리원	043-240-7980
검사대행기관 (연료제조기준, 유해중금속)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2-2164-0127
검사대행기관 (배출가스)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032-670-7844
	한국자동차연구원	041-559-3277

연료제조기준검사	유해중금속검사	배출가스검사
		
첨가제 제조자가 제시한 최대의 비율로 첨가제를 자동차 연료에 혼합한 시료가 아래의 검사 기준에 맞아야 함 ▶ 연료제조기준검사 : 휘발유는 방향족화합물, 벤젠 등 9개 항목, 경유는 황함량, 10%잔류탄소량 등 7개 항목 ▶ 유해중금속검사 : 카드뮴, 구리, 니켈, 크롬, 철, 망간, 아연, 알루미늄의 8개 항목 ▶ 배출가스검사 : 검사 차량의 배출가스 측정치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이내		

붙임 3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 절차

